

대구고등법원 2021. 11. 4 선고 2021나2225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구고등법원 2021. 11. 4 선고 2021나22252 판결

대구지방법원 2021. 4. 8 선고 2020가합204081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상무균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오기

변론종결 2021. 10. 21.

판결선고 2021. 11. 4.

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. 4. 8. 선고 2020가합204081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. 4. 12. 접수 제395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6. 11. 30.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(표 제외)의 “대구지방법원”을 “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”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용달, 판사 홍은아, 판사 함병훈

별지